

보내는 사람

검사장
가는길
(QR)

받는 사람

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,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,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,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
※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.

입영판정검사 통지서

통지번호: _____

대상자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		
통지내역	검사 일시	년	월	일(시 분)
	검사 장소	〇〇병역판정검사장(〇〇시·도 〇〇시·군·구 〇〇읍·면·동)		

「병역법」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〇〇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

직인

유의사항

-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「병역법」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「병역법」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.

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

- 귀하께서는 입영(소집)하기 전 현역병 복무 또는 군사교육소집 적합여부 검사를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실 대상이며, 입영판정검사 시 지참물을 안내드립니다.

대상자	내용
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명서 (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된 것) ◦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된 나라사랑 카드
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(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해당합니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
질병을 앓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(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병무용 진단서 ◦ 수술 등 기록지 사본 ◦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(방사선필름 등) ◦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과목·질환별 구비서류, 진단서 첨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의 경우에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.
-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「병역법」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
 -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「병역법」 제8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
 -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「병역법」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
 - 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
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
 -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
 -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(다만,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)
 -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
 -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·소집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
 -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
 -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
-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여비지급 안내

- 입영판정검사 여비는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(이하 “나라사랑 카드”라 함)의 결제계좌로 지급됩니다.
- 다만,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되므로,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비를 지급 받을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